

# 사내벤처 운영지침

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부

제정 2021. 9. 30. 지침 제345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내벤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사내벤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이라 한다)의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내벤처활동”이란 심평원 직원이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아이템 사업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마케팅, 경영관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예비사내벤처팀”이란 심평원의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선정된 팀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내벤처팀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운영되는 팀을 말한다.
3. “사내벤처팀”이란 사내벤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평원으로부터 사업성, 기술성,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화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사내벤처팀의 선정, 행정지원, 타부서와의 업무연계 등 사내벤처 제도 및 운영을 총괄 및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평가위원회”란 사내벤처팀의 선정, 운영성과 평가, 보상 등 사내벤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중간점검”이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기술구현 및 콘셉트, 시장성·사업성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최종평가”란 조기실패, 조기완료 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사내사업화’, 단순완료 또는 실패’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내벤처 아이디어 공모 및 접수

2. 사내벤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내벤처 신청서류 등에 대한 검토
3. 사내벤처팀의 선정, 사내벤처팀의 중간점검, 최종평가
4. 사내벤처팀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내벤처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5조(사내벤처팀 이행사항)** 사내벤처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명시된 계획의 성실한 이행(사업목표의 달성 등)
2. 관련 법률, 공고, 규정의 숙지와 준수
3.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사내벤처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 참여
4. 기타 심평원이 요청하는 자료, 점검 및 평가,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 사내벤처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내벤처팀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내벤처팀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내벤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의 임기는 그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내·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관련업무 담당부의 장으로 한다.
- ⑦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의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지명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신청 및 선정

**제9조(사내벤처 운영 분야)** ① 사내벤처를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또는 심평원의 보유기술 및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한 사업화 가능분야
2. 심평원의 기존 사업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3. 신사업 분야로서 심평원 전략 목표와 부합하고 수익성 또는 공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4. 그 외 심평원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사내벤처로 인정될 수 없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업
2. 심평원의 미션 또는 비전 등 경영전략에 반하는 사업

**제10조(신청자격)** ① 사내벤처 신청자격은 심평원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만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해당 공고에 따른다.

**제11조(예비사내벤처 신청)** 예비사내벤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사내벤처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되, 별도 공고에 따르며, 횟수 및 시기는 심평원의 운영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사내벤처팀 선정)**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예비사내벤처를 선정한다.

1. 심평원 전략과의 부합성 및 심평원 사업과의 연관성
2. 아이템의 사업성, 시장성 및 수익모델 창출 가능성
3.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및 정부 정책 실현 가능성
4.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위원회는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저촉유무 및 사업화 가능성, 생산·품질체제 변혁 및 경영시스템 개선 효과성 등에 대해 업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후 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인 중에서 예비사내벤처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예비사내벤처는 선정된 날로부터 담당부서가 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화전략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내벤처팀 선정)** 위원회는 예비사내벤처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 사업화전략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사내벤처팀을 선정한다.

1. 심평원 전략과 적합성 및 심평원 사업과 연관성
2. 목표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 비즈니스모델 및 수익성
3.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및 혁신성

**제14조(협약)** ① 심평원과 사내벤처팀은 벤처창업활동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내벤처팀은 세부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세부 실행계획서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심평원과 별지 제7호서식 사내벤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서 내용은 심평원과 사내벤처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평원은 사내벤처팀이 과제수행 중 제품화 과정, 시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을 요청한 경우, 적절한 검증절차와 사내벤처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벤처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관련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심평원과 협의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심평원에서 지원한 부대시설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제4장 운영 및 관리

**제16조(사내벤처팀 운영)** ① 사내벤처는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평원은 사내벤처팀 선정 후, 운영기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부대시설, 관련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사내벤처팀 복무에 관하여 인사, 보수, 복지 등은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경영·기술 지원)** ① 주관부서는 사내벤처팀의 행정적 업무에 대하여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심평원은 사내벤처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 관련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심평원은 사내벤처팀이 심평원 보유기술 등을 이용하는 경우, 기술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심평원은 사내벤처팀의 기타 경영 및 기술자문 요청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간점검)** ① 심평원은 사내벤처팀의 과제수행 경과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구현, 사업성 등 검증을 실시하며, 사내벤처팀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검결과는 '계속추진', '조기완료', '조기실패'로 한다.

④ 점검결과가 '조기실패' 또는 '조기완료'인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19조(최종평가)** ① 사내벤처팀은 운영기간 종료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주관부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최종보고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물
2. 사업목표 달성 여부 및 마케팅 활동 현황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③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내사업화', '단순 완료', '실패'를 최종 결정한다.

④ 심평원은 최종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내사업화하는 경우,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하나 원하는 경우 신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단순 완료 또는 실패의 경우,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원소속 복귀 또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 제5장 성과보상

**제20조(성과보상)** ① 사내사업화를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보상을 실시한다.

② 기술가치가 높고,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내벤처팀 참여인력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심평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내벤처팀 참여자의 성과기여도에 대한 평가 및 특별포상금의 지급은 평가위원회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제6장 기타사항

**제21조(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사내벤처팀의 전·현직 구성원은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심평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심평원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내벤처 신청자 이력사항

### 1. 인적사항

인적	성명		생년월일		
	사업명		대표/팀원		
경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및 직위
	부터	까지	부서명	주요 직무내역	
특기사항 (자격증, 상별 등)					

### 2. 사내벤처와 관련된 직무수행 내용

직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소요예산	결과활용 (사업실적)

## 사업추진계획서

사업명	사업명
사업개요	목적 및 사업추진 배경, 주요 사업내용 요약 등
환경분석	경제·사회 환경 분석, 시장분석(목표고객, 수익성 등)
사업추진 계획	세부사업내용, 사업추진전략, 제품화계획, 기대효과 등 ○ 심평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과의 연관성 ○ 제품(서비스), 혁신의 주요 내용 및 경쟁력 ○ 기술개발, 제품화 계획 및 차별화 전략 ○ 영업활동, 마케팅전략 ○ 기대효과(정성적·정량적) 및 고객(국민) 불편해소 여부 ○ 미래 청사진(향후 기대되는 사업의 미래 모습)
한계점·애로사항 및 대책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예상되는 위험 및 이에 대한 대책
추진일정	사업추진 계획서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한 일정계획
지원 요청사항	심평원의 경영자원(기술, 특허 등) 사용, 경영·기술자문 및 그 밖의 지원 사항
※ 참고사항 가. 각 항목별 내용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작성 나. 사업추진계획서 상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통계, 논문 등) 다. 혁신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제품화계획, 영업계획, 수익성 분석등을 생략할 수 있음	

## (예비사내벤처) 사업계획 평가표

사 업 명		접수번호				
평가요건	주요 평가 착안사항	A	B	C	D	F
심평원 사업과의 연관성 (40점)	· 사업 목표가 심평원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가?	10	8	6	4	2
	· 사업 구조가 심평원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가?	10	8	6	4	2
	· 심평원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10	8	6	4	2
	· 사업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10	8	6	4	2
사업계획의 수익성 (30점)	· 목표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있는가?	10	8	6	4	2
	· 목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력이 있는가?	10	8	6	4	2
	·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가?	10	8	6	4	2
정부 정책 이행 가능성 (20점)	· 사업 내용이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가?	10	8	6	4	2
	· 목표 달성 시 정부 정책 이행 효과가 있는가?	10	8	6	4	2
사업추진역량 (10점)	·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유사사업경험, 기술보유)	10	8	6	4	2
기타 평가 의견						
평가결과	총 점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평가위원			(인)			

## (사내벤처팀) 사업화전략 평가표

사 업 명		접수번호				
평가요건	주요 평가 착안사항	A	B	C	D	F
사업화전략과 심평원사업의 연관성 (40점)	· 사업을 통해 심평원의 경영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 심평원의 사업과 시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 심평원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했는가?	10	8	6	4	2
사업화전략의 수익성 (30점)	· '목표시장, 잠재적·현재적 경쟁자 및 경쟁 우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 '투자조달, 매출확보, 원가관리 및 이익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 사업 1차년부터 5차년까지의 연도별 수익 확대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사업화전략의 정부 정책 이행 가능성 (20점)	· 사업의 내용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 사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이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10	8	6	4	2
사업화 역량 (10점)	· 사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가? (인력, 기술 등)	10	8	6	4	2
기타 평가 의견						
평가결과	총 점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span>평가위원</span> <span>(인)</span> </div>						



[별지 제7호서식]

## 사내벤처 업무협약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이라 한다)과 사내벤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심평원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통한 심평원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내벤처 제도 도입·운영을 통해 사내 혁신·벤처문화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심평원의 경영성과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

심평원과 대표자는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사업화 및 체질혁신 등을 이끌어낸다는 사내벤처의 도입 취지를 인식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서 적극 협력한다.

###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심평원과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성실 이행)

심평원과 대표자는 사내벤처 운영지침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제5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평원과 대표자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심평원과 대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내벤처

원장 ○○○(인)

대표자 ○○○(인)

